



2018년도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

도시주택실

2017. 7. 11 (화)
도시환경위원회



Global Inspiration
세계속의 경기도

목 차

【주택정책과】

- 기존임대 매입임대 지원사업 3
- 기금 전출금(주거복지기금) 8

【따복하우스과】

- 따복하우스 건설비 지원사업 15
-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 19

【주택정책과】

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(자체/직접)	정책사업	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
	단위사업	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	기준보조율(%)	도비 100
	위원회명	도시환경위원회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2016년 이전	2017년 투자			2018년 예산안(C)	2017년 본예산 대비 증감 (C-A)	향후투자	비고
			계 (A+B)	당초 (A)	추경 (B)				
계	6,000,000	(3,000,000)	(3,000,000)	(3,000,000)		6,000,000	3,000,000		
국 비									
도 비	6,000,000	(3,000,000)	(3,000,000)	(3,000,000)		6,000,000	3,000,000		
시군비									
기 타									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
반영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2016.10월	2017.10월 예정	-	-	-	-	-

□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

○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

(기준 : '17.6.30 현재, 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확보액(A)	사업비 집행 현황			집행율(%) (B/A)	사업 시행방법			비고
		집행누계액 (B)	계약액	집행(계약) 일 자		도직접	재배정	시군 보조	
계	9,000,000	8,300,000			92				
2015년	3,000,000	3,000,000		'15.05.13	100	○			
2016년	3,000,000	3,000,000		'16.05.04	100	○			
2017년	3,000,000	2,300,000		'17.03.21	77	○			

○ '17년 추진실적 : 240호 목표(6월말 기준, 70호 매입)

- '16년말 기준 821호 매입('12년 202호 → '13년 180호 → '14년 95호 → '15년 148호 → '16년 196호)

○ 사업추진 자체평가 : 정상추진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도시주택실	주택정책과	주택정책팀	한대희 (8008-3460)	이식 (8008-4926)	오희수 (8008-4901)

□ 세부사업 설명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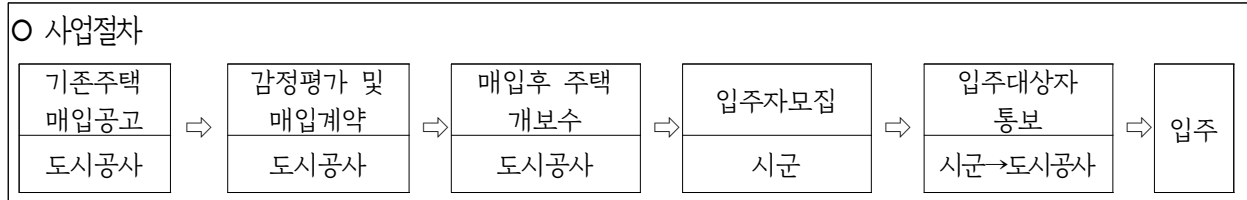
1) 사업 목적

-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

2) 사업 근거

- 법령 :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

3) 사업 집행절차



4) 사업 내용

- 사업 위치 : 도내
- 사업 기간 : 단년도
- 사업 량 : 300호
 - '17년 240호 → '18년 300호 증) 60호
- 소요예산 : 6,000,000천원
 - '17년 예산 : 3,000,000천원 → '18년 6,000,000천원 증) 3,000,000천원
 - 증가사유 : ①물량 60호 증가 (240→300호), ②호당 사업비 20,000천원 증가 (131,000천원→151,000천원)
 - * 호당 사업비 (증액 사유 : 매입주택의 질적(도심매입 등) 향상)
 - 당초 : 131,000천원(국비 101,000 도비 12,500 도시공사 17,500)
 - 변경 : 151,000천원(국비 101,000 도비 20,000 도시공사 30,000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경기도시공사

5)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

- 지원기관 : 경기도시공사
- 지원유형 : 사업비
- 예산과목 :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
- 지원근거 :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

○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(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)

-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「주택법」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(이하 "기존주택"이라 한다)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6)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 (통계목)	부기명	산출내역	2018년 예산안	2017년 예산	비고 (증감)
계			6,000,000	3,000,000	3,000,000
자치단체등자본이전 (공기관등에대한자본 적대행사업비)	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	- 20,000천원×300호 * 사업량 : '17년 240호 → '18년 300호(증60호) * 호당단가 : '17년 12,500천원 → '18년 20,000천원(증 7,500천원)	6,000,000	3,000,000	3,000,000

○ 사업량 : '17년 240호 → '18년 300호 증) 60호

○ 소요예산 : 45,300,000천원(국비 30,300,000 도비 6,000,000 도시공사 9,000,000)

〈도비 산출근거〉

- 물량증가 (240→300호) : 60호 × 20,000천원 =1,200,000천원
- 호당 사업비 증가(131,000→151,000천원) : 240호 × 20,000천원 = 4,800,000천원
 - 2017년 : 131,000천원(국비 101,000 도비 12,500 도시공사 17,500)
 - 2018년 : 151,000천원(국비 101,000 도비 20,000 도시공사 30,000)
- 사유 : 물량증가 60호, 매입주택의 질적 향상

✓ 도심 외곽·노후건물 매입으로 공실 발생, 청년층·사회초년생 외곽지역 거주 기피
 ✓ 도의회 상임위 매입단가 상향 필요 의견 제시('15 ~ '16 행정사무감사, 예산심의)

7)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·평가·문제점 및 대책

- 1) 도의회 행정사무감사·예결위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- 2) 감사원·도 감사관실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- 3) 언론·민원·시민단체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- 4) 자체평가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- 5) 외부평가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
8) 최근 3년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액		전년도 이월액	전용	변경	예산 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률 (B/A)	다음연도 이월액	불용액
	본예산	추경증감								
2014	1,800,000	0	0	0	0	1,800,000	1,710,000	95	0	0
2015	3,000,000	0	0	0	0	3,000,000	2,960,000	99	0	0
2016	3,000,000	0	0	0	0	3,000,000	2,940,000	98	0	0

○ 전용·변경 사유 : 해당 없음

○ 이월액 발생 사유 : 해당 없음

○ 불용액 발생 사유 : 해당 없음

9) 주요 결산사항

2014	- 해당 없음
2015	- 해당 없음
2016	- 해당 없음

10)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 : 해당사항 없음

11) 기타 보충자료 :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현황관리 현황(별첨)

□ 사업개요

- (법적근거)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
- (시 행 자) 경기도시공사
- (매입량) 기존주택 300호('17년 240호)
- (사업기간) 2018. 1 ~ 12월
- (예 산) 6,000백만원(호당 20,000천원×300호)
 - 증액사유 : 물량증가(60호), 매입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호당 단가 상향

V 도심 외곽·노후건물 매입으로 공실 발생, 청년층·사회초년생 외곽지역 거주 기피
 V 도의회 상임위 매입단가 상향 필요 의견 제시('15 ~ '16 행정사무감사, 예산심의)

- 호당 매입 금액 및 기관별 부담 현황
 - (2017년) 131,000천원[국비등101,000(77.1%), 도비12,500(9.5%), 도시공사17,500(13.4%)]
 - (2018년) 151,000천원[국비등101,000(66.9%), 도비20,000(13.2%), 도시공사30,000(19.9%)]
- (입주대상) 저소득 일반가구 · 대학생
 - 【일반가구】
 - 1순위 :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이하 장애인 등
 - 2순위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% 이하가구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이하 장애인
 - 3순위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가구
 - 【사회적주택(따복기숙사)】
 - 입주자격 : 대학생(신입생, 재학생, 다음 학기 복학예정인자)
 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이하
- (임대기간) 2년마다 계약, 최장 20년 거주 / 대학생 6년
- (임대조건) 임대보증금 400만원 내외, 월임대료 10만원 내외

□ 현 황

- '12~'16년까지 총 821호 공급, '17년 240호 공급 계획 / 70호 매입

합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821호	202호	180호	95호	148호	196호

- '17년 감정평가 91호(10동)실시하여 6월말 현재 70호(7동) 매입완료
 - * LH공사 2,000호 공급계획 / 540호 매입

□ 향후계획

- 지역별 매물대상조사→감정평가 · 계약→입주자 모집

참고 2

대학생 따복기숙사 시범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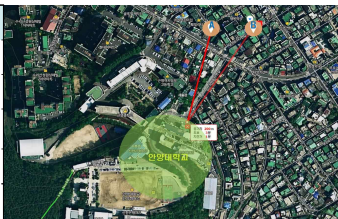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- (개요) 대학교 주변에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대학교에 임대하고, 입주자 선정 등 대학교에서 운영 관리

* 추진근거 : 「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」제47조 및 제63조의 3

- (사업량) 2동 16호(2인 1실, 32명)

구 분	A동	B동
호수/연면적	8호(원룸)/369㎡	8호(원룸)/355㎡
준공년도	'16년	'17년
매입금액	12억원	12.95억원
소유권 이전	'16.12.26	'17.5.31
입지환경	안양대 200m이내	



- (입주자격) 대학생* (재학생, 입학·복학생)

* 무주택자로서 부모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이하(예시 : 3인 이하 341만원)

- (임대료) 시중 전세가격의 30% 수준으로 공급

- 평균 36㎡기준 월 242천원(2인 사용 시 1인당 121천원)

* 최소 26㎡ 월 193천원(1인 기준 97천원), 최대 55㎡ 월 393천원(1인 기준 197천원)

□ 추진현황

- 따복기숙사 도입방안 TF회의(3.7. ~ 3.22.)

- 물건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(4.25.)

* 안양대학교 인근 시범사업 물량 매입 완료(2동 16호, 신축 원룸형 주택)

- 운영기관 선정(안양대학교) 및 입주자 모집(6.16. / 6.26.)

□ 향후계획

- 자격심사(사회보장정보원, ~ 8.5.) → 입주(8월말)

- '18년 사업으로 8개 희망대학 공급 추진(1대학 20호 내외)

* 아주대, 성결대, 중부대, 외대, 한신대, 동남보건대, 동서울대, 오산대 (5.22, 교육협력과 조사)

기금 전출금(주거복지기금)	정책사업	재무활동
	단위사업	내부거래지출
	기준보조율(%)	도비 100
	위원회명	도시환경위원회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2016년 이전	2017년 투자			2018년 예산안(C)	2017년 본예산 대비 증감 (C-A)	향후투자	비고
			계 (A+B)	당초 (A)	추경 (B)				
계	6,000,000	2,000,000	3,000,000	3,000,000		6,000,000	3,000,000	18,000,000	
국 비									
도 비	6,000,000	2,000,000	3,000,000	3,000,000		6,000,000	3,000,000	18,000,000	
시군비									
기 타									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
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2016. 10.	-	-	-	-	-	-

□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

○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('17년 예정)

(기준 : '17.7.4 현재, 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확보액(A)	사업비 집행 현황			집행율(%) (B/A)	사업 시행방법			비고
		집행누계액 (B)	계약액	집행(계약) 일 자		도직접	재배정	시군 보조	
계	5,000,000	2,000,000	2,000,000	-	40				
2015년	-	-	-	-					
2016년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'16.8	100	○			
2017년	3,000,000	-	-	-	0	○			

○ '17년 추진 실적 : 저소득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(총 4억 원) : '17. 10월 시행예정

*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2회 추경 반영 예정('17. 7 ~ 8월)

○ 사업추진 자체평가 : 정상추진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도시주택실	주택정책과	주거복지팀	한대희 (8008-3450)	김병태 (8008-4923)	이정규 (8008-4951)

□ 세부사업 설명서

1) 사업 목적

-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· 조성

2) 사업 근거

-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·관리 조례 제2조(기금의 조성)

3) 사업 집행절차

○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→ 도 금고 예치

4) 사업 내용

- 사업 위치 : 도내
- 사업 기간 : 2018. 1월 ~ 12월
- 사업 량 : 2018년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6,000,000천원
- '17년 3,000,000천원 → '18년 6,000,000천원
* 보통세 1,000분의 2이내 ('17년 道 보통세 세입 74,037억원, 0.2% 적용시 148억원)
- 사업시행방법 : 일반회계 기금 전출 후, 도 금고 예치
- 사업시행주체 : 경기도

5)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 : 해당 없음

6)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 (통계목)	부기명	산출내역	2018년 예산안	2017년 예산	비 고 (증감)
계			6,000,000	3,000,000	3,000,000
도금고 예치금	도금고 예치금	○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대 소요 반영한 기금 적립 - 사업량 : '17년 200호 → '18년 2,300호*(증 2,100호) * 2,300호 :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 전체	6,000,000	3,000,000	3,000,000

- '18년부터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('17년 200가구 → '18년 2,300가구)로 인해
매년 40억원 이상 소요*되며, 추가 주거복지사업 발굴 및 추가사업을 위한 필요액 확보를 위해
매년 60억 원 이상 기금 전입 필요

* 연도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소요예산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소요예산(억 원)	4	40	41	42	43
산출근거	2007가구×200만원 가구당 지원 평균 약 170만원~190만원 적용				

※ 정확한 금액은 집행부 추가 협의 후 최종 예산안으로 제출 예정

7)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·평가·문제점 및 대책 : 해당없음

8) 최근 3년간 결산현황(2016년)

연 도	예산액		전년도 이월액	전용	변경	예산 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률 (B/A)	다음연도 이월액	불용액
	본예산	추경증감								
2016	2,000,000	0	0	0	0	2,000,000	2,000,000	100%	0	0

9) 주요 결산사항 : 해당없음

10)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 : 해당없음

11) 기타 보충자료 :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(안) (별첨)

□ 개 요

- 설치근거 : 「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·관리 조례」 제1조 ~ 제4조
- 기금최초설립 / 존속기한 : 2016.7.19. / 2022.6.12.
- 목 표 :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
- 재 원 : 도세 보통세의 1,000분의 2 이내
- 기금용도 :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, 주거복지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(조례 제3조)

□ 기금운용계획(안)

○ '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[단위 : 천원]

수입		지출			
		당초('17년 예산심의)		변경	
합계	5,015,562	합계	5,016,000	합계	5,031,562
전입금	3,000,000	1. 재무활동 (예치금)	5,016,000	1. 재무활동 (예치금)	4,631,562
예치금	2,000,000	2. 정책사업	-	2. 정책사업	400,000
예금이자	15,562		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	400,000

* '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정기배정에 따라 '17년 전입금 30억 원 하반기 중 일반회계 기금 전출 : 예산담당관-10834(2017.6.5.)

○ '18년 기금운용계획(안)

[단위 : 천원]

수입		지출	
합계	11,119,362	합계	11,119,362
전입금	6,000,000	1. 재무활동	6,719,362
예치금 (융자금)	5,031,162 (400,000)	2. 정책사업	4,400,000
예금이자	88,200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('17년 4억 원 융자금 포함)	4,400,000

□ 종합의견

- 내년부터 '21년 까지 매년 60억원씩 기금전출 시, 전출 총액은 290억원이며, 지원사업 소요액은 172억원으로 잔여 예치금 118억원의 적립이 예상되어 안정적 기금 운용 가능(이자수익 미반영)
- 무이자 융자사업으로 인해 수익성은 취약하나, 만기시 전액 회수되어 안정적이며, 별도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이 우수함

【따복하우스과】

따복하우스 건설비 지원 사업 (자체/직접)	정책사업	따복하우스 사업추진
	단위사업	BABY 2+ 따복하우스 조성
	기준보조율(%)	도비 100
	위원회명	도시환경위원회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2016년 이전	2017년 투자			2018년 예산안(C)	2016년 본예산 대비 증감 (C-A)	향후투자	비고
			계 (A+B)	당초 (A)	추경 (B)				
계	40,000,000	(0)	(3,800,000)	(0)	3,800,000	12,000,000	12,000,000	24,200,000	
국 비									
도 비	40,000,000	(0)	(3,800,000)	(0)	3,800,000	12,000,000	12,000,000	24,200,000	
시군비									
기 타									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
반영	면제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2016.10월	2016.12월	-	-	-	-	-

□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

○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

(기준 : '17.6.30 현재, 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확보액(A)	사업비 집행 현황			집행율(%) (B/A)	사업 시행방법			비고
		집행누계액 (B)	계약액	집행(계약) 일 자		도직접	재배정	시군 보조	
2017년	38,000,000	38,000,000		'17.6.30	100	○			

○ '17년 추진 실적

- 수원광교 등 4개 지구(291호) 입주자 모집('16.12./'17.1.)
- 민간사업자 선정(1~4차 4,352호 완료, 5~7차 2,332호 공모 중, 755호 설계공모 중)
- 수원영통 등 2개 지구(150호) 사업승인 완료, 안양관양 등 4개 지구(1,057호) 착공

○ 사업추진 자체평가 : 정상추진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도시주택실	따복하우스과	따복하우스기획팀	송해충 (8008-3230)	손호진 (8008-3231)	김규원 (8008-3232)

□ 세부사업 설명서

1) 사업 목적

-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미중물 역할
- 주거비 완화로 결혼을 유도하고, 육아형 주택공급으로 출산 장려

2) 사업 근거

-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(공공주택의 자원·세제지원 등)

제3조의2(공공주택의 자원·세제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, 매입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

3) 사업 집행절차

- 후보지 선정 →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→ 착공 → 입주자 모집 → 입주자 선정 → 준공 → 입주
-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파복하우스 공정률 감안 시행자에게 연차별 지급 (20%-25%-25%-30%)

4) 사업 내용

- 사업 위치 : 경기도 전지역
- 사업 기간 : 2016년 ~ 2020년
- 사업 량 : 파복하우스 총 10,000호 공급
* 신혼부부 육아 공간 확보를 위한 공급 면적 증가(8.9㎡)에 따른 추가 건설비
- 사업시행방법 : 공기관대행사업
- 사업시행주체 : 경기도시공사

5)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

- 지원기관 : 경기도시공사
- 지원유형 : 사업비
- 예산과목 :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
- 지원근거 :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, 파복하우스 추진계획 도지사 정책발표 (‘16.5.17.)

6)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 (통계목)	부기명	산출내역	2018년 예산안	2017년 예산	비 고 (증감)
계			12,000,000	3,800,000	8,200,000
자치단체등 자본이전 (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)	파복하우스 건설비 지원	건설비 400억 연차별 현금보조 (‘17년 38억, ‘18년 120억 ‘19년 150억, ‘20년 92억)	12,000,000	3,800,000	8,200,000

※ 추가 건설비(평균면적 초과부분) 확보는 현금보조(400억) 및 현물출자(공유재산) 병행 추진 계획임

7)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·평가·문제점 및 대책

- 1) 도의회 행정사무감사·예결위 지적 및 대책 : 해당없음
- 2) 감사원·도 감사관실 지적 및 대책 : 해당없음
- 3) 언론·민원·시민단체 지적 및 대책 : 해당없음
- 4) 자체평가 지적 및 대책 : 해당없음
- 5) 외부평가 지적 및 대책 : 해당없음

8) 최근 3년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액		전년도 이월액	전용	변경	예산 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률 (B/A)	다음연도 이월액	불용액
	본예산	추경증감								
2014		0	0	0	0		0		0	0
2015		0	0	0	0		0		0	0
2016		0	0	0	0		0		0	0

- 전용·변경 사유 : 해당없음
- 이월액 발생 사유 : 해당없음
- 불용액 발생 사유 : 해당없음

9) 주요 결산사항

2014	- 해당 없음
2015	- 해당 없음
2016	- 해당 없음

10)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 : 해당사항 없음

11) 기타 보충자료 : 파복하우스 건설비 지원 사업(별첨)

□ 사업개요

-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투룸형의 면적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하여, 아이 낳을 수 있는 주거 여건 확보 및 출산 장려
 - 면적(전용) : 행복주택(1타입 36㎡) → 따복하우스(2타입 36㎡, 44㎡)
 - 공급비율 : 행복주택(투룸 43%) → 따복하우스(투룸 55% 이상 확보)
- 따복하우스 건설시 국비 및 기금 지원을 받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평균면적 초과부분에 대해 도에서 추가 지원 *
 - * 국비지원기준 46.9㎡(14.2평) → 따복하우스 55.8㎡(16.9평) / 초과분 8.9㎡(2.7평) 道 부담
 - 1만호 건설비 재원구성

계 (단위 : 억원)	국비	기금	사업자·입주자	도비(추가)
11,873	2,980	3,973	2,980	1,940

※ 1호당 추가사업비 1,940만원(건설단가 218만원/㎡×초과분 8.9㎡)

□ 추진계획

- 따복하우스 연차별 공급계획

구 분	소계(정책목표 물량)	'16.	'17.	'18.	'19.	'20.
사업 승인	10,000	1,557	6,640	1,803		
착 공	10,000	300	4,562	3,284	1,854	
준공(입주)	10,000		112	513	3,270	6,105

□ 주요 내용

- 추가 건설비 확보방안 : 예산보조(400억) 및 공유재산 현물출자 병행 추진
- 예산보조

소요예산 (억원)	'17년	'18년	'19년	'20년
400	38	120	150	92

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(자체/직접)	정책사업	따복하우스 사업추진
	단위사업	BABY2+ 따복하우스 조성
	기준보조율(%)	도비 100
	위원회명	도시환경위원회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2016년 이전	2017년 투자			2018년 예산안(C)	2017년 본예산 대비 증감 (C-A)	향후투자	비고
			계 (A+B)	당초 (A)	추경 (B)				
계	45,917,668	(0)	(984,934)	(984,934)		3,958,437	2,973,503	40,974,297	
국 비									
도 비	45,917,668	(0)	984,934	984,934		3,958,437	2,973,503	40,974,297	
사군비									
기 타									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홍보물 사전심의	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
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2016.10월	-	-	-	-	-	-

□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

○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

(기준 : '17.6.30 현재, 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확보액(A)	사업비 집행 현황			집행율(%) (B/A)	사업 시행방법			비고
		집행누계액 (B)	계약액	집행(계약) 일 자		도직접	재배정	시군 보조	
계	984,934	200,000	0		20				
2017년	984,934	200,000	0	'17.6.16	20	○			

○ '17년 추진 실적

- 보증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(道(-경기도시공사-LH공사-NH농협은행)('17.5.31)
- 보증금 지원 사업 시행('17.6.1)

○ 사업추진 자체평가 : 정상추진

□ 사업 담당자

실국	과	팀	과장	팀장	주무관
도시주택실	따복하우스과	따복하우스지원팀	송해충 (8008-3230)	김기범 (8008-3237)	김진석 (8008-3239)

□ 세부사업 설명서

1) 사업 목적

- 파복하우스 및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
- 입주 및 출산 자녀수에 따라 지원 금액 증가로 출산율 제고

2) 사업 근거

- 주거기본법 제15조(주거비 보조)
- BABY 2+ 파복하우스 추진계획 수립 및 발표('16.5.17, 도지사 정책발표)
-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('16.10.14)

3) 사업 집행절차

○ 이자지원 신청(입주자) → 정보* 확인 및 지원금 산정(경기도시공사) → 지원금 지급(경기도청) → 지원금 수령(입주자)

* LH(계약정보) 및 금융기관(대출정보) 제공

※ 접수기관 : 파복하우스 입주자 - 경기도시공사 / 행복주택 입주자 - LH, 사업시행 지자체

4) 사업 내용

- 사업 위치 : 경기도 전 지역
- 사업 기간 : 2018. 1월 ~ 12월
- 사업 량 : 총 16,258호
※ 보증금 지원 대상자는 파복하우스 및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- 지원 기준 : 입주 및 출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지원
- 사업시행방법 : 공기관대행사업
- 사업시행주체 : 경기도시공사

5)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 : 해당없음

6)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 (통계목)	부기명	산출내역	2018년 예산안	2017년 예산	비고 (증감)
계			3,958,437	984,934	2,973,503
자치단체등이전 (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대행사업비)	파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	'18년 지원대상 16,258호 × 호당평균지원액* (347,823원/년) × 예상 대출률(70%) * 호당 평균지원액은 지역별, 가구별로 상이함 예) 김포한강(신혼부부 36㎡형) 433,630원 김포장기(사회초년생 16㎡형) 59,590원	3,958,437	984,934	2,973,503

7)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·평가·문제점 및 대책

- 1) 도의회 행정사무감사·예결위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- 2) 감사원·도 감사관실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- 3) 언론·민원·시민단체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- 4) 자체평가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- 5) 외부평가 지적 및 대책 : 해당 없음

8) 최근 3년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, %)

연 도	예산액		전년도 이월액	전용	변경	예산 현액 (A)	집행액 (B)	집행률 (B/A)	다음연도 이월액	불용액
	본예산	추경증감								
2014										
2015										
2016										

- 전용·변경 사유 : 해당 없음
- 이월액 발생 사유 : 해당 없음
- 불용액 발생 사유 : 해당 없음

9) 주요 결산사항

2014	- 해당 없음
2015	- 해당 없음
2016	- 해당 없음

10) 타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 : 해당 없음

- 전국최초 (유사사례 없음)

11) 기타 보충자료 :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(별첨)

□ 산출 기초자료

- 시세추정 : 사업지역 12곳(수원, 성남, 시흥 등)의 '16년 1~3월까지 주택 전 세거래의 평균 실거래가 (국토교통부)
 - * 건축년도 '14~'16년, 아파트, 연립/다세대
- 44㎡형(신혼부부) : 1억1,990만원 / 36㎡형(신혼부부) : 1억841만원
- 26㎡형(저소득, 노년층) : 8,575만원 / 16㎡형(대학생, 사회초년생) : 5,517만원
- 보증금 월세 비율 = 50 : 50 (표준임대료)
- 계층별 입주 비율
 - 따복하우스(신혼50%, 대학생·사회초30%, 수급자·고령자20%)
 - 행복주택(신혼43%, 대학생·사회초37%, 수급자·고령자20%)
- 신혼부부 자녀 출산 비율 및 기간 ('14 신혼가구 주거실태 조사)
 - 무자녀 12.5%, 1자녀 54.6%, 2자녀이상 32.9%
 - 출산기간 : 신혼→1자녀(1년) / 1자녀→2자녀(2년) / 3년 내 2자녀
- '17년 이후 예산은 최근 5년간 전세가격 상승률 연6.4% 적용
- '18년 지원대상 가구수의 예상 대출률 70%을 감안하여 소요예산 반영
 - 김포한강(신혼부부 36㎡형, '18.3월 입주예정)
 - 표준임대보증금×2.9%(지원금리)/12개월×10개월×40%(기본자원)=433,630원
 - 김포장기(사회초년생 16㎡형, '18.10월 입주예정)
 - 표준임대보증금×2.9%(지원금리)/12개월×3개월×40%(기본자원)=59,590원

□ 연도별 지원대상 가구수 및 소요예산 추계

	단위:호	계	'16	'17	'18	'19	'20
지원대상 가구수 (호)	계	60,000	-	7,080	16,258	27,027	60,000
	따복하우스	10,000	-	32	1,711	4,861	10,000
	행복주택	50,000	-	7,048	14,547	22,166	50,000
소요 예산 (백만원)	계	45,918	-	985	3,958	14,502	26,473
	따복하우스	8,358	-	0.7	323	2,408	5,626
	행복주택	37,560	-	984	3,635	12,094	20,846